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제2차시험 행정법 문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문 1】택배기사 甲은 동창회 모임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S지방경찰청장 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거하여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甲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의견진술 기회 포기”의 의사표시로 잘못 이해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甲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S지방경찰청장 乙은 그때서야 甲을 불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1) S지방경찰청장 乙이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15점)
 - (2) 사안과 같이 S지방경찰청장 乙이 甲의 소제기 후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 (15점)
 - (3) 위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취소소송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라. (20점)
- (단, 절차상 하자 외 다른 하자는 없고, 취소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전제로 함)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문 3】 사정판결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